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서희건설(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는(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총칭하여 "납품대금"이라 한다)를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금융기관"(이하"병" 이라 한다)이 대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쌍방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약정서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타 약정서 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약정서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2. 본 약정은 "갑"이 "을"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이나 당좌수표(이하 현금이라 한다)에 의한 지급과 전자결제 제도를 이용한 지급방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과의 약정 체결 및 등록)
1. "을"이 "갑"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병"에게 수금용으로 자유입출금식 예금계좌개설 또는 "병"과 전자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제반서류(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지정계좌등록확인서-은행발급)를 갖추어 납품대금 지급일 14일전까지 (거래발생 시점으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4일미만인 경우 거래 성립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을"이 "병"과 전자결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대금 지급일 14일전까지(거래발생 시점으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거래 성립시)"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병"에게 직접 제출하여 상기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을"은 1항에 의하여 "갑"에게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거나 병과의 약정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갑"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방법)
1.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갑"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납품대금을 전자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납품대금지급명세를 통보하여, 지정된 결제일에 "병"이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을"이 지정된 결제일 이전에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을"과 "병"사이에 체결된 '전자결제 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선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 제2항의 경우 "갑"은 "을"과의 거래계약 또는 "을"과의 지급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병"에게 지급위탁(여기서 '지급위탁'이라는 용어는 배치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리얼타임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배치방식에 의한 연지급 자금이체 통지, 리얼타임방식에 의한 연지급 자금이체 통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 이하 본 약정서에 쓰이는 '지급위탁'이란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입금표)
제4조에 의한 대금지급시, 현금과 전자결제 제도에 따른 지급의 경우 별도의 입금표를 집취하지 않기로 하고, 제4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지급위탁을 받은 "병"이 지급위탁 결과를 "갑"과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전송하고 이 전산자료를 "갑"이 출력한 경우 출력된 전산자료는 "을"이 직접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병"이 확인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한 증빙서류(입금필통지서)도 "을"이 직접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착오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납품대금 지급과정 중에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착오 입금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반환토록 한다.

제7조 (지급보류)
"갑"은 "을"의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있거나 "을"이 제공한 제품 또는 용역에 품질상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가 없거나 서면통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착오 입금분의 반환이 즉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을"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8조 (책임)
1. "갑"은 제4조에 의한 현금 지급의 경우 입금이 완료된 시점, 전자결제의 경우 "병"으로 부터 전산자료를 전송 받는 시점 또는 증빙

서류를 교부 받은 시점에 "을"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을"과 "병"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은 제3조에 의해 "을"의 수금은 은행계좌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기존 통지사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불이익이나 위험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갑"은 "을"과 "병" 사이의 약정 및 그에 따른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약정의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은 "갑" "을" 쌍방의 서면 합으로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갑"과 "을"중 일방의 해지 요청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금용 은행계좌 및 등록정보>

계좌개설은행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통 장	
상 호			
대 표 자		인 감	
사업자 등록 번호		전 화	
사 업 장 주 소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주식회사 서희건설
대표이사 곽 선 기

을 :
(인)법인 또는 개인인감